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무 추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3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무 추가 (안 제29조제1항)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7.

다.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의무 추가(안 제29조제1항)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구성에 관한 사항, <u>그 밖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 ----- ----- ----- ----- <u>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9조1)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공연이나 팬미팅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²⁾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의 안전 인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공연 및 팬미팅 등 행사 현장에서는 「공연법」³⁾, 「경비업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과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과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 4)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연장 안전관리, 경호 인력 운영 등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할을 정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생략)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생략)

4)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입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법률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개별 교육 항목을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사항’과 같이 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행사에서의 안전 확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외에도 안전전문가, 경호업체 등 여러 주체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사의 경우 공연·팬미팅의 개최 빈도나 규모가 대형 기획사와 상이한 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교육 의무 부과가 개별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음악레이블 산업협회 (25.12.9.)	○ (현행 유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규모 행사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기획업자뿐 아니라 안전전문가, 경호업체, 경찰 등 협력구조로 종합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기획업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중소기업사의 경우 공연이 상시 진행되지 않고, 공연을 개최하더라도 대형기획사와는 그 규모가 매우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기획업자 대상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특이 다수 개별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한국매니지먼트 연합 (25.12.9.)	○ (현행 유지) 개정법률안의 입법 배경에서 밝힌 행사장의 안전문제나 과잉경호 등의 문제는 기획업자의 교육부재나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문제를 기획업자의 교육 등 의무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해당 개정법률안은 실제 사례에서의 사고유발 당사자(ex. 공연안전관리자 또는 경호업체의 경호인력)와 법률의 의무 수범주체(ex. 기획업자)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선행 연구도 없이 제도로 도입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임.

참고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개요

□ 대중문화예술분야 교육 운영(4대 교육)

- 사업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종사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구분	등록교육	법정교육	소양교육	성교육
관련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29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19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29조
교육 대상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기획업 등록요건을 갖추려는 개인	등록 기획업자 *최초: 21.07.01~22.06.30 *연간: 14.07.29~21.06.30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 연예인 (연습생 포함)	기획사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포함)
교육 시간	40시간	최초 6시간, 연간 3시간	-	1시간
교육 방법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 개론(8)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12) -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20)	-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 자살, 성폭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등 각종 사회문제 예방 교육 - 관련 법 내용 및 준수사항 등	- 성교육 - 심리교육 - 기본소양 - 인성관리 - 자기계발 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 성폭력·성매매·성희롱에 관한 법령 - 성폭력 등 예방방법 및 발생 시 구제절차 등
교육 비용	100,000원 * VAT 포함, 수입국고반납	-	-	-
기타	연 3회 운영 (5, 8, 11월)	-	기획사의 신청 및 일정 조율을 통해 강사 방문교육 추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법정교육 세부 교육내용(안)** * 세부시간 및 강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초교육(오프라인, 6시간)**

구분	주요내용	세부시간
1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이해 - 신의성실 의무,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 필수 명시 사항, 표준계약서의 활용, 회계처리, 금지행위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 조치의무, 영업의 승계, 휴업·폐업 재개의 신고, 행정조치 등	2시간
2	○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 최신 분쟁 사례 - 분쟁 대응 및 예방 방법	3시간
3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시, 촬영(제작) 시 유의사항 -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	
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접권과 퍼블리시티권*	1시간

*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업

○ **연간교육(온라인, 3시간): 기 제작된 콘텐츠 활용**

구분	주요내용	세부시간
1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모성보호, 퇴직급여,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 주요 결과	1시간
2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1.5시간
3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원칙 및 금지행위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등	
4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등)	0.5시간
5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병무 행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